

미국 계육유통의 역동성과 수출전망

편집부

4개 업체에 26억원 과징금 부과, 농축산물 특수성 감안하지 않은 처사
농축산물의 가격안정 행위, 담합행위로 간주되는 선례 남기면 안돼

지난 2002년 하반기부터 2003년말까지 우리 계육업계는 생산과잉과 수입닭고기 물량 증가에 따른 육계가격 생산비 이하 형성,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감소로 인해 장기불황에 허덕였다.

실제 2003년도 육계 생산원가는 kg당 1,050원이었으나 평균 육계가격(대닭 기준)은 kg당 800원이었으며, 5월 27일부터 7월 21일까지 장장 56일 동안은 700원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여기에 얹힌 데 덮친 격으로 2003년 12월 국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발생, 산지 육계가격은 kg당 600원대로 폭락했으며, 경영난을 이기지 못한 화인코리아와 체리부로, 우인산업 등 계열업체가 줄지어 도산했다.

여기에다 최고 80%까지 닭고기 소비가 감소하면서 국내 육계업계는 사상 유래없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되었다.

급기야는 닭고기 소비감소로 인해 유통업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까지 발생했으며,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다가 국내 육계산업이 붕괴되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감이 팽배해졌다.

이러한 이유로 본회와 회원사는 생존을 위한 자구책으로 닭고기 제값 받기 모임을 여러 차례 가졌으며, 그 모임에서 제비용(도축수수료)을

인상하자고 논의했다. 그동안 산지 육계시세를 기준으로 거래처 공급가격이 결정되는 국내 닭고기 유통시장의 비정상적인 시스템하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제비용(도축수수료)은 계열업체에 가장 큰 경쟁수단이었다. 그러다보니 계열업체는 타 업체와의 경쟁과 유통거래처의 주문량 조절을 통한 저가거래강요에 의해 실제 소요되는 제비용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했다.

그러나 생존을 위한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고 수십 차례 협의를 거쳐 결정한 제비용 현실화는 상대적으로 계열업체에서 주도권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제비용을 조정할 대신 원료구매가격을 시세에서 D/C해주는 생계D/C 관행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

'닭고기 제값 받기'는 여러 차례 모임에서 상호 협의 내용의 준수를 종용하고 계속 보완을 협의했으나 결국 제대로 실행조치 하지 못하고 실패, 종료하게 되었다. 더욱이 제비용 수준도 협의이전으로 또는, 그 이하로 하락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05년 5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 조사단이 본회와 본회 4개 회원사를 불시에 방문, 짙막하게 방문 목적을 설명하고 장장 6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본회와 회

08

원사에 보관 중인 각종 관계서류를 송두리째 카피해갔다.

문제는 업계의 ‘닭고기 제값 받기’ 시도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오히려 공동행위(담합)로 간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가격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부당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당시 계육업계는 이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사실도 몰랐지만, ‘닭고기 제값받기’는 특별한 위기상황에서 살기 위한 방법이고 마지막 한가닥 희망이었지 소비자가를 높이기 위한 모임이 결코 아니었다.

만약 그러한 행위의 위법성을 사전에 인지했다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그 당시 상황에서 누구라도 위법과 적법을 논할 여유가 전혀 없었을 것이다. 잘못이 있다면 법에 대한 무지가 그것이었다.

1년여에 걸친 조사 끝에 2006년 6월 7일 공정위는 25차례의 회합을 통해 닭고기 도계육 가격 인상과 거래처 고정 및 출고량 조절 등을 합의 실행·유지로 인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살아보겠다고 버둥거리는 계열업체(16개사)에 ‘183억5천1백만원 과징금 부과’라는 청천병력과도 같은 심사결과를 통보했다.

기본적으로 농축산물은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탄력성이 적어 공급량의 작은 변화에도 가격이 급격하게 등락을 거듭하게 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는 농축산물의 가격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단체·협회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필요시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해 수급을 안정시키고 있는 현실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당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설 정도로 극심한 불황속에서 이루어진 계열화업체의 생존자구책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에 대해 농림부도 다수 영세한 생산자들의 공동조직에 의한 시장 대응이 불공정행위로 인식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공산품이나 서비스요금과는 다른 시각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수차례 공정위에 전달한 바 있으며, 이와 같이 많은 과징금 부과 방침이 알려지자 육계사육 농가를 비롯한 축산업계는 일반 공산품과는 성격이 다른 농축산물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축산업계의 현실을 외면한 극단적인 처사라고 공정위를 강력히 비난했다.

한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는 2006년 6월 30일 일제히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정위의 닭고기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천부당, 만부당한 것이므로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는 축산업계 전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의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2006년 7월 19일 공정거래심의위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닭고기 제값 받기' 모임을 '담합'으로 간주하여 하림과 마니커, 체리부로, 동우 등 총 4개사에 대해 26억6천7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9개 업체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본회에 대해서도 시장을 통한 정보수집 및 이미 거래된 도계육·삼계가격과 거래물량에 관한 정보, 생계의 산지별 거래가격 및 공급물량에 관한 정보 이외의 가격·물량 정보의 게재와 고시를 금지토록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담합에 가담한 본회 16개 회원사 중 13개 업체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영향에 따른 특수상황, 농축산물의 수급조절 곤란 및 가격의 급등락 등 특성, 관련 업체 및 사육농가의 영세성 등을 감안해 메이저 4개사에 한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농축산물은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수급조절을 해오는 품목으로서 이를 공정거래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공정위는 이 건을 농축산물의 가격에 관한 담합이 아니라 이를 가공한 2차 생산물(도계육, 삼계, 육가공품)의 가격을 인상하기 위한 가공업자들간의 담합인 만큼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생산단계가 계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육농가가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나, 이 건 담합은 사육농가에 돌아가는 사육수수료 또는 생계

시세를 올리는 게 아니라 가공업자들의 비용을 올려받는 것이었다며 과징금 부과결정시 고려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생계의 약 80%가 계열업체의 소유인데다 원료구매가격이 생계시세에 의해 결정되는 국내 닭고기 유통구조에서 '사육농가에게 돌아가는 사육수수료 또는 생계시세가 아닌 가공업자들의 비용을 올려받은 것'이라는 공정위 주장 역시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주목해야 할 것은 이번 육계업계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곧 농축산물의 가격안정 행위가 '담합행위'로 간주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문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가격안정대책을 위한 행위가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도록 농축산물의 특수성을 법적으로 인정받도록 공정거래법상에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이유로 본회는 공정위의 정식 공문이 접수되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4개사와 협의,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본 건과 관련 문서와의 싸움을 벌였던 지난 1년 2개월동안의 일들을 아래와 같이 간단히 정리해 보았다.

1. 개요

- 2003년 12월~2004년 3월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닭고기 등의 소비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본회

회원사 중 4개 업체가 부도에 빠지는 등 국내 계육업계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음.

- 이에 본회는 2004년 3월~2005년 1월까지 총 25회의 모임을 갖고 생존을 위한 비상대책 방안으로 도계수수료 인상(도계 150원/kg), 생닭의 원가이하 판매 자제, 육계가격 하락시 도계량의 10~30% 비축 등을 협의함(닭고기 제값 받기).
- 그러나 여러 번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협회 회원사들의 가격인하 경쟁은 계속되어 결과적으로 도계수수료 인상은 실현되지도 못했고, 시장가격 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주지도 못함.
- 공정위는 이러한 행동을 부당한 공동행위로 간주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가격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부당행위' 여부 조사에 착수(2005. 5. 16)
- 그리고 2006년 7월 19일 공정거래심의위 전원회의에서 본 건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 16개 업체중 4개사에 과징금 26.7억원 부과

2. 조사기간 : 2005. 5. 16 ~2006. 7. 19(약 1년 2개월)

3. 조사대상

- 육계도계육(15개사) : 하림, 마니커, 체리부로, 동우, 성화, 한강, 해마로, 신명, 우림, 키토랑, 육성, 대연, 플러스푸드, 농협, 하

림CNF

- 삼계(6개사) : 하림, 마니커, 체리부로, 동우, 금계, 키토랑
- 육가공(5개사) : 하림, 마니커, 체리부로, 성화, 농협
- 단체(1개) : 한국계육협회

4. 조사내용

- 육계도계육 : 생계·도계육가격 인상, 거래 상대방 제한, 출고량 조절 협의
- 삼계 : 삼계시세 조정, 할인폭 제한 및 출고량 조절 협의
- 육가공 : 육가공품 최저 공급가격 협의
- 단체 : 생계, 도계육 및 삼계시세 게재·고시

5. 조치내용

- 심사보고서(2006. 6. 7) : 협회 포함 총 14개 피심인에 과징금 183억51백만원 부과(대연, 플러스푸드, 하림CNF 제외)
- 심의결과(2006. 7. 19) : 하림, 마니커, 체리, 동우 총 4개사에 과징금 26억7천만원 부과(협회포함 10개 업체 제외)

6. 후속조치

- 정식 공문접수 : 2006년 8월 초 또는 중순 예상(공정위 심판행정팀)
- 과징금부과 4개사 향후 진행방향 : 정식 공문접수 후 검토 결정 